

#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2-8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폐지사유

조례제정목적인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져 「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함.

## 3. 폐지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## 4. 폐지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## 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2. 6.21 ~ 2012. 7.11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2. 8. 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